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18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2205318)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7조의4 신설, 제47조의5, 제67조 및 제70조)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6
다. 국토교통부 의견	11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220531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3.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 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착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 5 및 제67조제6호의2).

Ⅲ. 검토의견

1.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7조의4 신설, 제47조의5, 제67조 및 제70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동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동 시스템 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 상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대폐차에 관한 사항,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활용하는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시스템-----

현행	개정안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u>제47조의5·제47조의6</u>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6의2. <u>제47조의4</u>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u>제47조의5</u>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략) 20.·21. 삭제 21의2. <u>제47조의6</u>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 <u>제47조의6·제47조의7</u> (현행 제47조의5 및 제47조의6과 같음) 제67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제47조의5</u>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등----- ----- ----- ----- 6의3 <u>제47조의6</u>----- ----- ----- -----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9. (현행과 같음) 21의2 <u>제47조의7</u>----- ----- ----- -----

현행	개정안
22. ~ 27. (생략) ③ (생략)	22.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재 화물운송행정, 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대폐차, 자동차 등록정보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 제63조 또는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1)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중략)

립된 협회²⁾에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는바,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지자체 및 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전자화 미흡, 기관간 정보 연계 미흡 등으로 정보

-
6. 법 제13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법 제17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의 신고
 9. 법 제18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법 제20조(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법 제21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후 략)
-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후 략)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

관리에 곤란³⁾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협회 간 정보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지역을 빈번히 이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서 화물차 불법증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 및 종사자 관리에 애로가 있고 화물운송 시장 질서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⁴⁾에 따르면 화물운송행정업무 중 인허가 업무는 법률에 정의된 행정처분 정보를 통해 인허가 가부가 결정되나, 행정처분 정보는 협회 인허가 행정처분 정보,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정보,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정보, 안전운임 행정처분 정보 등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행정처분 정보의 연계가 불가하므로 통합관리시

3) 예를 들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충청북도 인허가 시스템 자료의 신고의무대상자(운송사)를 비교하였을 때, 충청북도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일부만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가입 등록자료와 일치하였고, 업체 소속차량의 경우에도 일부만 실적관리시스템과 차량정보가 일치하는 등 정보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이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을 말함.

나중희 (2017)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 설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4, 35-42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 운영, 철저한 화물차 허가 정보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47조의4 제2항은 동 시스템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제63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64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⁵⁾에 따라 여기에는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

5) 제15조(권한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 지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 2의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 4의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5.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
의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6.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
경력의 제공
 7.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8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에 관한 업무 등 화물운송행정과는 다소 무관한 사항을 위임·위탁받은 주체도 포함되는바, 이렇듯 정보 보유주체가 아닌 자들도 문연상 정보 등록의무 주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등록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로 하여금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에는 화물운수종사자 등의 개인정보(사업자명, 자동차등록번호 등)가 포함될 수 있고, 동 시스템의 취지 상 공공·민간이 연계된 형태의 시스템이 될 것인바 연계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보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전체의 정보 유출, 위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동 시스템 상 정보의 엄밀한 관리를 위해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안대책 수립의무 부과 및 처벌조항은 현행법⁶⁾에 근거하여 구축·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운영 중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해 기 적용 중인 사항들임.

참고로,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동 시스템 구축에는 3년간 195억원이 소요되고 운영 시 연간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3.94로 추정하였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현재 기관 간 정보 분산·연계 부족으로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 증차(일부 업체는 지역 이전(지자체) 및 대폐차(협회)를 동시 진행하고 시스템 혼선을 이용하여 불법 증차) 등 위법행위에도 취약한 상황임.

또한, 운송사 허가 및 실적 정보 관리도 어려우며, 지입 현황 등 운송 시장의 객관적 통계 생성과 이에 따른 정책 진단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도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